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 제2020-79호

2020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전북지역 수출 창업기업의 마케팅 역량 강화지원을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『2020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』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(재)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

Ⅰ 모집개요

□ 사업목적

❍ 전북도내 창업 기업의 **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통한 수출 역량 강화**

□ 주요내용

❍ 모집대상 : 전북 창업 7년 이내 수출 희망 스타트업

❍ 선정규모 : 총 10개사 내외

- 지원에 적합한 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.

❍ 지원내용

- IR 자료 및 기업소개 리플릿, 홈페이지 외국어(영문, 중문 등) 번역
- 기업 및 제품 홍보동영상 외국어 제작 또는 자막 지원
- 기업 당 금5,000천원(금오백만원) 내외 / **심사 후 차등지원 예정**

※ 기업당 부담사업비 매칭 비율(50만원, 10% 이상)

❍ 사업기간 : 협약 후 ~ 2020년 12월 까지

Ⅱ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□ 신청자격

- 전라북도 내 업력 7년 이내(13년 이후) 창업기업의 대표자 지원
- 농어촌 소재 창업기업의 대표자 우대 선발 예정

☞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 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

*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'개업연월일'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'회사성립연월일'을 기준

* 최초 회사설립일이 사업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(개인·법인)를 소지하고 있거나 폐업한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제외

- 최근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의 동일분야 과제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(⇨ 중복성 검토 후 평가전 대상 업체에 통보)
- **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 : 총 지원 사업비의 10%이상**
- 신청제외대상

☞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

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

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('19.5.15.)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☞ 중소벤처기업부(舊 중소기업청) 동일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*을 통해 지원받은 자**(기업), 기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자(기업)

※ 중단(중단처분·중도포기자) 포함

* 중소벤처기업부 사업화 지원사업 목록 참조

** 사업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자는 해당사업에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

☞ 타 중앙부처의 동일사업화 지원사업*을 수행 중인 자(기업)로 해당 사업의 협약종료일이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을 초과**하는 경우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창업을 전제로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, 지식재산권 확보,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패키지로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사업

** 타 중앙부처의 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종료가 동 사업의 접수마감일보다 3개월 이내로 남았을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나, 동 사업에 최종선정 되었을 경우 타 사업화 지원사업의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

☞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

☞『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』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

* 정부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참조

☞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□ 창업인정 기준

※ 동종 및 이종업종에 대한 구분은 통계법 제22조 1창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·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(4자리)를 기준으로 함(통계청 통계분류포털 참조)

❍ '창업'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신청하는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☞ **기존 기업*(개인, 법인)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**
* 폐업 기업 포함

☞ **기존 기업(개인, 법인)을 폐업하지 않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**

☞ **개인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(사업승계 제외)**

❍ '창업'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
☞ **기존 기업*(개인, 법인)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** ※ 조직변경, 형태변경, 위장창업에 해당
* 폐업 기업 포함

☞ **기존 기업(개인, 법인)을 폐업하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** ※ 법인전환, 사업승계에 해당

☞ **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** ※ 사업이전(재창업)에 해당

☞ **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** ※ 사업확장, 업종추가에 해당

Ⅲ 지원내용

□ 글로벌 마케팅 지원 내용

1. 글로벌 피칭 성공을 위한 'IR 자료 번역' 지원

가. 목적 : IR 피칭자료 외국어 번역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투자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

나. 지원내용 : 해외 투자 또는 시장 진출을 위해 준비된 IR 자료에 대한 영문, 중문 등 언어 번역

2. 온라인 해외고객 유입을 위한 '홈페이지 외국어 번역' 지원

가. 목적 : 기 구축된 홈페이지의 외국어 번역 지원을 통해 온라인, SNS 마케팅을 통해 유입되는 해외 고객 대상으로 창업기업의 제품 소개 및 판매, 인지도 향상 등 기대

나. 지원내용 : 홈페이지 구축 기업을 대상으로 영문 또는 목표시장 언어 번역 지원

3. 국내외 박람회 참여기업을 위한 '카달로그 외국어 번역' 지원

가. 목적 : 수출 박람회 및 바이어 매칭에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 카달로그 제작 지원으로 기업의 수출 및 홍보역량 강화

나. 지원내용 : 국문 카달로그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목표시장 외국어 번역 지원

4. 온라인, SNS 마케팅을 위한 '기업 및 제품 홍보동영상 제작' 지원

가. 목적 : 기업 및 제품 소개영상 외국어 제작 지원을 통해 온라인과 SNS 홍보 활성화 기여

나. 지원내용 : 창업기업 제품 및 기업소개 영상제작 지원 (외국어 버전, 자막 삽입버전 등)

□ 지원항목

분야	세부분야		세분야
마케팅 활성화	국외 마케팅	홍보물 번역	• (입점과 수출을 위한) 물류수수료, 번역, 번역 브로슈어 제작, 온라인 웹페이지 제작 등
		홍보영상 제작	• (입점과 수출을 위한) 홍보 동영상 제작(외국어, 번역본) 등

비목	비목 정의
외주용역비	•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제품개선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일부 공정에 대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
지급수수료	• 사업화를 위한 거래를 수행하는 대가로 요구하는 비용(기술이전비,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멘토링비, 기자재 임차비, 운반비, 보험료, 보관료 등)
광고선전비	• 기업 제품과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제작비,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비, 포장 디자인비, 일간지 등의 광고게재, 기타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

☐ **사업수행기간** : 협약일로부터 ~ 2020년 12월까지

Ⅳ 신청 및 접수

☐ **신청기간** : 2020. 10. 13.(화) **~ 10. 19.(월) 18:00까지**

☐ **접수방법** : **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접수(문의처063-220-8955)**

※ 신청양식 :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온라인 신청 플랫폼 – 공지사항 다운로드
(http://event.jbci.or.kr)

❍ 사업 지원 신청 : 공고문, 신청서 다운로드 및 온라인 업로드

❍ 신청서 수정 및 확인

- 공고 마감일까지 수정가능, 접수확인
- 이름, 휴대전화, 이메일, 신청 시 설정 비밀번호(숫자4~8자리) 입력 후 본인 신청내용 확인 가능

☐ **제출서류** ※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

❍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**(필수)**

❍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1부**(필수)**

❍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**(필수)**

❍ 대표자 신분증 사본**(필수)**

❍ 사실증명(홈택스 발급가능)**(필수)**

- 기창업자 : 사실증명원(총사업자등록내역),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, 법인등기부등본(법인), 폐업증명원(폐업사실이 있을 경우)

* 사실증명 발급절차 : 국세청 홈택스 → 민원증명 → 사실증명신청 → 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/사업자등록사실여부)

** 기창업자 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/ 예비창업자 : 현재 혹은 과거에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는 자

❍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각 1부(2019년도 分**(필수)**)

*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로 대체가능

❍ 실적(매출, 수출, 투자, 고용 등) 증빙서류**(기업성과 작성자)**

매 출	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
수 출	수출실적 증명원(한국무역협회 발급), 수출계약서, 해외특허등록서, 국제인증서, 국제협약서 등
투 자	투자계약서(투자금액 포함), 투자금액 입금 통장사본 등
고 용	4대보험 가입자 명부

❍ 기타 제출서류(해당자)

☐ **선정평가**

❍ **심사진행 및 최종선발**

: 경제성 및 사업화 효과, 사업계획 적정성, 파급성, 중복지원 검토 등을 평가하여 최종 평가 통과자 선발 및 사업화지원금 최종 확정

☐ **추진일정** ※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사업 공고	신청서 접수	결격사유검토
2020. 공고일 ~ 10. 19.	2020. 10. 13. ~ 10. 19.	2020. 10. 20. ~ 10. 21.
홈페이지	JBCCEI 온라인 접수	

⇩

심사진행	통과자 안내	이의제기 접수 및 심의
2020. 10. 21.	2020. 10. 22.	2020. 10. 22 ~ 10. 23
평가위원회	e-mail, SNS	평가위원회

⇩

최종 결과 안내	협약 체결	사업수행
2020. 10. 26.	~ 2020. 10. 29.(협약일)	2020. 10. 29.(협약일) ~12월까지
e-mail, SNS		

Ⅶ 유의사항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- ❍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,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
- ❍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(지침, 기준)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선정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□ 선정 후 유의사항

- ❍ 선정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, 사업비 환수·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❍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
□ 선정자의 의무

- ❍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사업 완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
- ❍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
- ❍ 선정자가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를 집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- ❍ 선정자는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,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- ❍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

【참고 1】

지원제외 대상 업종

구분	대상 업종	코드번호 세세분류
1	금융 및 보험업	K64~66
2	부동산업	L68
3	숙박 및 음식점업(호텔업, 휴양콘도 운영업,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은 제외)	I55~56
4	무도장 운영업	91291
5	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	9112
6	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	9124
6	기타 개인 서비스업	96

*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통계청, kssc.kostat.go.kr) 참고